

# 평창군 농어업인 수당 지원 조례안

의안 번호	344
----------	-----

제출년월일 : 2021. 4.

제 출 자 : 평 창 군 수

## 1. 제안이유

농어업과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농어업활동을 통한 환경보전, 농어촌유지 등 농어촌의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고 농어업인의 소득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농어업인 수당 지원에 필요한 근거 마련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용어 정의, 책무(안 제1조 ~ 제4조)

나. 지급대상 및 수당지급 제외대상(안 제5조 ~ 제6조)

다. 지급액 및 지급 방법(안 제7조)

라. 지급 신청 및 확정(안 제8조)

마. 이의신청, 미지급 및 환수(안 제9조 ~ 제10조)

##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별첨

나. 예산조치 :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반영 예정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입법예고(2021.1.29.~2021.2.19) 결과, 제출의견 없음
- 2) 규제심사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기획실-1416(2021.1.28.)호)
- 3) 부패영향평가 : 부패유발요인 없음(기획실-1416(2021.1.28.)호)
- 4) 성별영향분석평가 : 개선사항 없음(가족복지과-3761(2021.1.26.)호)

## 평창군 농어업인 수당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과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기 위하여 농업인 수당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어업”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과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어업을 말한다.
2. “농어촌”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과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어촌을 말한다.
3. “농어업인”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 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 나.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임업인
  - 다.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
4. “농어업경영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농어업경영체를 말한다.

5. “공익적 기능”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9호에 따른 공익기능을 말한다.

6. “농어업인 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이란 농어업·농어촌이 가진 공익적 기능이 최대한 유지·증진되도록 하기 위하여 농어업인에게 지급되는 수당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수당을 지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농어업인의 책무)** 수당을 지급받는 농어업인은 농어업·농어촌의 공익적 기능 유지와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급 대상)** ① 수당 지급 대상자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어업경영체의 경영주 또는 공동경영주인 농어업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으로 한다.

1. 신청 연도의 1월 1일 전일까지 2년 이상 계속해서 강원도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법」에 따라 평창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

2. 신청 연도의 1월 1일 전일까지 2년 이상 계속해서 농어업에 종사하면서 농어업경영체로 등록되어 있는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지급대상의 범위를 확대할 경우에는 「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른 사회보장제도의 변경에 대한 협의 이행을 위해 강원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조(수당 지급 제외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은 지급 대상자에서 제외한다.

1. 신청 전전년도 농어업 외의 종합 소득금액이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1항의 기준금액 이상인 사람
2. 신청 전년도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사실이 있는 사람
3. 신청 전년도에 「농지법」, 「산지관리법」, 「가축전염병 예방법」, 「수산업법」, 「수산자원 관리법」을 위반하여 처분을 받은 사람

**제7조(지급액 및 지급방법)** ① 수당은 도지사와 재원분담이 합의된 금액을 매년 지급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수당은 현금 또는 평창군에서 사용가능한 상품권으로 일시 또는 나누어 지급할 수 있다.
- ③ 군수는 재정여건과 경제지표 등을 고려하여 지급액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지급 신청 및 확정)** ① 수당을 지급 받으려는 사람(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군수가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수당을 신청할 수 있다.

-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와 사업추진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신청인의 동의를 받아 확인 후에 수당 지급 대상자를 확정한다.
  1. 신청인의 재산, 소득, 실제 영농 여부, 실 거주 여부

2.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사항

**제9조(이의신청)** 제8조제2항에 따라 지급 대상자를 확정할 때, 대상자에서 제외된 사람은 군수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제10조(미지급 및 환수)** ① 수당 지급 대상자로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지급 대상자가 사망, 주민등록말소 등의 사실이 확인된 경우
2. 지급 대상자가 강원도 외의 지역으로 진출하는 등의 사유로 강원도에 실제로 거주하지 않는 것이 확인된 경우
3. 지급 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경우

② 군수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을 지급 받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 수당을 환수하여야 한다. 다만, 사망 또는 실종 등 환수가 불가피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11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의 보조금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평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관련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2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당 지급 대상자에 대한 특례)** 제5조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2019년 12월 31일까지 임야대상 농업경영체로 등록되어 있고 계속해서 임업에 종사하고 있는 임업인이 2021년에 수당 지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5조제1항제2호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붙임]

## 관계법령 발췌

###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4조(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농업인·소비자 등의 책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과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고, 안전한 농산물과 품질 좋은 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며, 농업 인력 육성, 농업인과 농촌주민의 소득안정,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종합적인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농어업경영정보의 등록) ① 농어업·농어촌에 관련된 용자·보조금 등을 지원받으려는 농어업경영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하 “농어업경영정보”라 한다)을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농업경영체: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40조에 따른 농지·축사·임야·원예시설 등 생산수단, 생산농산물, 생산방법 및 가축사육 마릿수 등 농업경영 관련 정보 및 용자·보조금 등의 수령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농업경영정보”라 한다)

2. 어업경영체: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27조에 따른 어선·양식시설 등 생산수단, 생산수산물, 생산방법 및 어업생산규모 등 어업경영 관련 정보 및 용자·보조금 등의 수령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② 농어업경영정보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의 유효기간은 등록 또는 변경한 날부터 3년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농어업경영정보의 등록 및 변경 절차와 농



어업경영정보 등록부의 작성·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붙임]

## 비용추계서

###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 관련조문 : 조례안 제5조(지급대상) 및 제7조(지급액 및 지급방법)
- 비용발생 요인 : 농어업인 수당 지원

### 2. 비용 추계결과

#### 가. 추계의 전제

- 신청 연도의 1월 1일 전일까지 2년 이상 계속해서 강원도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신청일 현재 평창군에 거주하는 사람
- 신청 연도의 1월 1일 전일까지 2년 이상 계속해서 농어업에 종사하면서 농어업경영체로 등록되어 있는 사람

#### 나. 추계 결과

- 2018년말 기준 농어업경영체(임업,어업포함) 등록건수 6,847건
- 강원도 농정과-58(2021.1.4.)호 보조금 교부 관련
- 농어업인수당 : 2021년 소요예산액 5,882건 4,117,400천원
  - 농업경영체 5,810건 × 700,000원 = 4,067,000,000원
  - 임업경영체 57건 × 700,000원 = 39,900,000원
  - 어업경영체 15건 × 700,000원 = 10,500,000원

#### 다. 재원조달 방안

- 의존재원(도비) 및 자체재원

### 3. 작성자

작성자	평창군 농업축산과장 이상명
연락처	(033) 330 - 1302

**< 연도별 비용추계표 >**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1년)	2차년도 (2022년)	3차년도 (2023년)	4차년도 (2024년)	5차년도 (2025년)	계
세 입							
세 출		4,117,400	4,888,100	5,080,600	5,110,000	5,180,000	24,376,100
농어업인 수당 지원		4,117,400	4,888,100	5,080,600	5,110,000	5,180,000	24,376,100
재원 조달		4,117,400	4,888,100	5,080,600	5,110,000	5,180,000	24,376,100
의존 재원	소 계	2,470,440	2,932,860	3,048,360	3,066,000	3,108,000	14,625,660
	보조금	2,470,440	2,932,860	3,048,360	3,066,000	3,108,000	14,625,660
	지방교부세						
자체 수입	소 계	1,646,960	1,955,240	2,032,240	2,044,000	2,072,000	9,750,440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채							
기 금							
공기업 특별회계							
민간자본							
해외자본							
기타 (채무부담, 민자 등)							